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
----------	-----

2019년 3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이태성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 : 2018년 10월 25일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8일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각종 공공급식시설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9호).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19. 1. 04. ~ 1.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발의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하 ‘관내 우수식재료’)의 공급활성화 방안을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5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생략) <u>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u>9.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생략) <u>④ (생략)</u>	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의 자치구와 생산지(기초지방자치단체)를 1:1로 연결하여 공공기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구조로, 식재료 생산 기반이 적은 서울시가 농촌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는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생산지는 안정적 소득창출을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요 >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생산지와 자치구간 1:1 매칭을 통한 식재료 직거래
- 대상품목 : 생산지 조달가능 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 차액지원 대상 : 공공급식 참여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차액지원 기준 : 70%이상 시 1인1식 마다 5백원, 50%~70% 1인1식 마다 250원
- 친환경농산물 단계적 확대 : (2018) 50% → (2019) 60% → (202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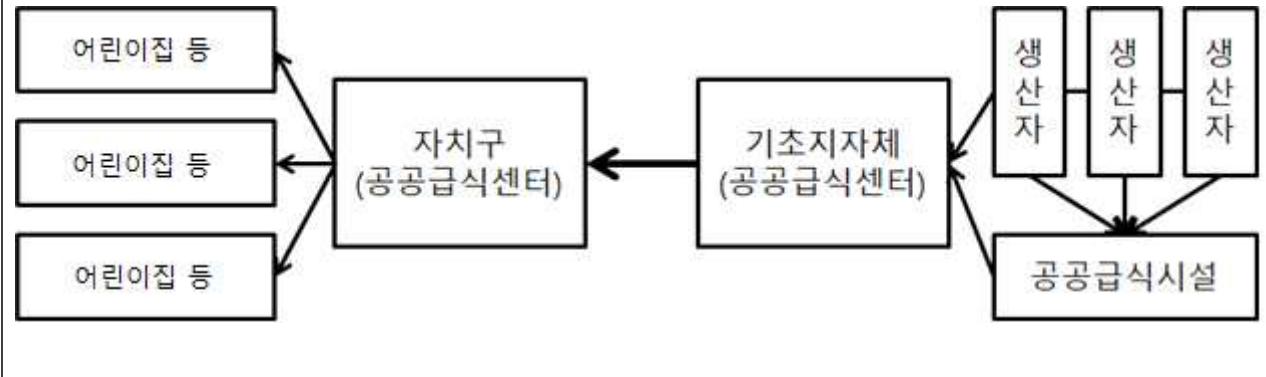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2017년 시범운영 6개구
 - (1:1매칭) 강동-완주, 금천-나주, 성북-담양, 강북-부여, 노원-홍성, 도봉-원주
- 2018년 확대 4개구
 - (1:1매칭) 서대문구-전주, 동작구-강진, 은평구-군산, 중랑구-영광
- 2019년 확대 3개구 계획
 - 사업참여 신청 : 송파·영등포구('19.3월 개소) 동대문구('19.7월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개 자치구	13개 자치구	16개 자치구	20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 현재까지의 공공급식은 식재료의 안전성 및 농촌의 소농, 가족농 보호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여 자치구와 생산지간 1:1매칭 방식으로 식재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의 흐름도 >



- 「지역농산물직거래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 목적¹⁾과는 달리 본 조례²⁾는 타 지역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자치구와 생산지(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1:1 매칭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식재료는 그 공급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자치구 및 생산지 1:1 매칭현황 >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영등포	송파	동대문
↔	↔	↔	↔	↔	↔	↔	↔	↔	↔	↔	↔	↔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남원	안동	김해

-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3조제9호는 서울시 관내 우수식재료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 구축된 공공급식 체계에 관내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3천4백여 농가 중 전업은 26.4%, 겸업 농가는 73.6%이며, 우리나라 전체 농가(104만2천여 가구)의 56.2%는 전업농가, 겸업농가는 43.8%라는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비록 그 수는 미미하지만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관내 농가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시 관내 농가 현황 >

(단위:가구)

합계	전업	겸업		
		소계	1종 겸업	2종 겸업
3,410 (100%)	899(26.4%)	2,511(73.6%)	69(2.0%)	2,442(71.6%)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농가현황 통계 (2017년말 기준)
- 농가 : 조사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전업 :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겸업 :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 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제1종 겸업: 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적은 겸업 농가
- 제2종 겸업: 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겸업 농가

* 관내의 농작현황은 1,084헥타르(10,840,000㎡)에서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6,910톤의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음.

< 서울시 관내 농산물 생산 현황 >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992			
주요농산물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 (천본)	-
			6,910			

- 안 제5조제4항은 관내 우수식재료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우수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농산물을 수급할 수 있는 공적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농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농상생의 반작용으로 서울시 관내의 농업경제를 도외시하고 있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도농상생과 함께 관내 농업인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음.
- 부가적으로, 공공급식은 생산지의 안전검사 미이행, 생산지의 식재료 생산 능력 부족(최소 59종의 주요 식재료가 납품 능력이 필요하나, 20여 종의 식재료 공급 능력을 가진 생산지 선정 - 원주, 홍성, 부여), 중간유통자 생성으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홍성·부여는 3단계 유통구조이며, 나주·담양·원주·전주 등은 직접구매/중간유통구조 병행)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안전한 식재료를 유통과정 축소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25일

발의자 : 이태성, 유용, 채인묵,
김생환, 김용석, 박순규,
안광석, 이광호, 권수정,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각종 공공급식시설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장의 책무에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 나.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타 지역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④ (생략)</p>	<p>제5조(지원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90,40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90,405천원으로 연평균 78,081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중 쌀 이외의 채소류 등은 추계에서 제외하고 생산물량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생산된 친환경쌀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전량 조달되는 것으로 가정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390,405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총 비용(b-a)	78,081	78,081	78,081	78,081	78,081	390,405

○ 세부산출내역

사업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계	78,405천원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 친환경쌀 공급차액 : [66,000원(서울시 관내 생산 친환경쌀 시장가) - 40,780원('18년 정부 고시가)]×3,096포 (20KG 단위, '18년 생산량) = 56,400천원	= 78,405천원 78,405천원

주: '18년 생산(예상)량 산정은 '17년 재배면적당 산출량을 고려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